

제 호					
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			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5·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		
	성명		생년월일 (성별)	()	
	주소				전화 번호
용도		채용시험 가점	가점비율	%	
제출처					
위 사람은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 보 훈 지 청 장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					
※ 유의사항 1.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 2. 취업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://job.mpva.go.kr)에서 제공하는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					
우편번호 - / 주소 / 전화 () - / 전송 () -					
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(전자우편)					